

의안번호	제 161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339회)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헌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
----------	-----

발의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임헌경, 박병진, 임순목,
강현삼, 김봉희, 이광진,
연철흙

1. 개정이유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

1) 행정부지사 →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나. 공동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15조)

1) 행정부지사 →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다.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삭제(안 제26조)

라.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를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이 조례는”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요청일로부터”를 “요청날부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이상 14인이하”를 “5명 이상 14명 이하”로, “2이상의”를 “2개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요청이 있는”을 “요청을 받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5조에 따라”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1조제3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이”를 “없으면 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를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u></p> <p>제1조(목적) <u>조례는</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u>영 제12조제4항의 규정</u>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시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u>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농정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u>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② (생략)</p> <p>③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이</u> 모두 부</p>	<p><u>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u> ----- ----- ----- ----- <u>시행에</u> ----- -----.</p> <p>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u>영 제12조제4항에 따른</u>----- ----- ----- -----.</p> <p>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장과</u>-----</p>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군수의 결정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 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제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 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영 제133

-----.

제12조(회의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그 밖에 ----- 서면으로-----.

⑦ (현행과 같음)

⑧ -----

요청날부터-----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

1. -----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
우에 한한다), 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용도 지역 등의 변경계
획과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생략)

3.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
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14인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
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5조(공동위원회) ①·② (생
략)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
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 법 제9조에 따른-

----- 법 제59조에 따른---

2. (현행과 같음)

3. -----

-- 법 제50조에 따른-----

② -----

----- 5명
이상 14명 이하-----

2개 이상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공동위원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도
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

④ (생략)

제1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략)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① (생략)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을 때에는
-----.

제19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요청을
받은 -----
-----.

제20조(수당 및 여비) ① 법 제115조에 따라-----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별도의 기획단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단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요구 등) ① (생략)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도시계획의 결정)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충청북도 도세 기본

----- 않은 -----

제24조(자료의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을 때에는 -----.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② -----
----- 없으면 이-----
-----.

③ -----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

<삭 제>

부과·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